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용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981

발의연월일: 2025. 2. 7.

발 의 자: 박용갑・박정현・박희승

조인철 · 정준호 · 한민수

복기왕 · 장철민 · 강유정

서미화 • 박해철 • 박수현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도심 내 주차난이 심화됨에 따라, 주차환경개선지구 제도의 실 효성을 높이고, 공동주택의 주차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.

현행법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을 주로 주거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, 상업지역 및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주차난 해결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.

이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요건을 확대하여, 상업지역 및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에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.

한편,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보유 차량이 주차 가능 대수를 초 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 주차난이 심 각해지고, 인근 도로 및 주거지역에서 불법주차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 생하고 있음.

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2년, 공동주택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·민간 부설주차장을 개방·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음.

그러나 현재 법령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 근의 공공·민간 부설주차장을 개방·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 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.

이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공공·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개방 및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(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19조제1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3호(종전의 제2호) 중 "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"을 "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"으로 한다.
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

제19조제14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보유 차량이 해당 공동주택의 주차 가능 대수를 초과하여 주차난이 발생하는 경우, 시장·군수· 구청장에게 해당 공동주택 인근의 공공·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·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연 행	개 성 안
제4조(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)	제4조(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)
① 시장・군수 또는 구청장은	①
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	
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	
장 확보율(주차단위구획의 수를	
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	
을 말한다. 이 경우 다른 법령에	
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	
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	
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	
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	
때 제외한다)이 해당 지방자치	
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	
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	
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	
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	
있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
	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
	나목에 따른 상업지역
2.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	<u>3</u> . <u>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거</u>
접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방자	지역 및 상업지역
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	

② · ③ (생 략) ① ~ ③ (생 략) <신 설>

<u>④</u> ~ <u>⑦</u> (생 략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19조(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) 제19조(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 자의 보유 차량이 해당 공동주 택의 주차 가능 대수를 초과하 여 주차난이 발생하는 경우, 시 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해당 공 동주택 인근의 공공・민간건축 물 부설주차장을 개방 ·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ⓑ ~ ⑱ (현행 제14항부터 제1

7항까지와 같음)